

# 예 산 총 칙

2020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03,881,870	18,116,456
일반회계	534,149,578	16,024,487
특별회계	69,732,292	2,091,969
공기업특별회계	39,834,048	1,195,021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15,870,207	476,106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3,963,841	718,915
기타특별회계	29,898,244	896,947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695,920	20,87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30,000	900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18,468,232	554,04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006,006	30,180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2,064,055	61,922
수질개선 특별회계	6,792,715	203,781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841,316	25,23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6,656,728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0,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